



보도	배포시	배포	2024. 10. 8.(화)
----	-----	----	-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기업공시국	책임자	팀 장	김대일	(02-3145-8486)
	지분공시1팀	담당자	선임조사역	오재빈	(02-3145-8493)
	금융민원국	책임자	팀 장	박관우	(02-3145-5510)
	금융민원기획팀	담당자	선임조사역	변자영	(02-3145-5511)

##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

- 주가 급변에 대한 유의 및 공시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. -

### ■ 소비자경보 2024-32호

등급	주의	경고	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

### 소비자경보 내용

-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어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고,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도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 전자공시시스템(DART)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### <소비자 유의사항>

- 1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.
- 2 근거없는 풍문 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
- 3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세금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.
- 4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5 공개매수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
- 6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에 따라 공개매수 응모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7 공개매수 조건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시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.

## I. 발령 배경

-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공개매수가 진행 중으로 공개매수 당사자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상
  - 근거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
- 특히,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할 필요
  - 또한, 공개매수는 장내거래와 다른 특징들이 있으므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

## II. 공개매수 제도

- 공개매수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장외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도의 청약 등을 권유하여 매수하는 제도
  - 공개매수자는 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를 매수하여야 하고,
  - 법령상 공개매수 기간은 20일 이상 60일 이내이며, 공개매수 조건 변경 등 정정신고서 제출 시 종료일이 연장될 수 있음
- 다만, 매수가격의 인하·매수예정주식수 감소·매수기간의 단축·지급기간의 연장·대가의 종류 변경 등 청약자에게 불리한 공개매수의 조건 변경은 법상 금지되어 있으며,
  - 공개매수 공고일 이후 원칙적으로 철회는 금지되나, 매수자의 파산·부도 및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철회가 가능

### Ⅲ. 소비자 유의사항

#### ①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공개매수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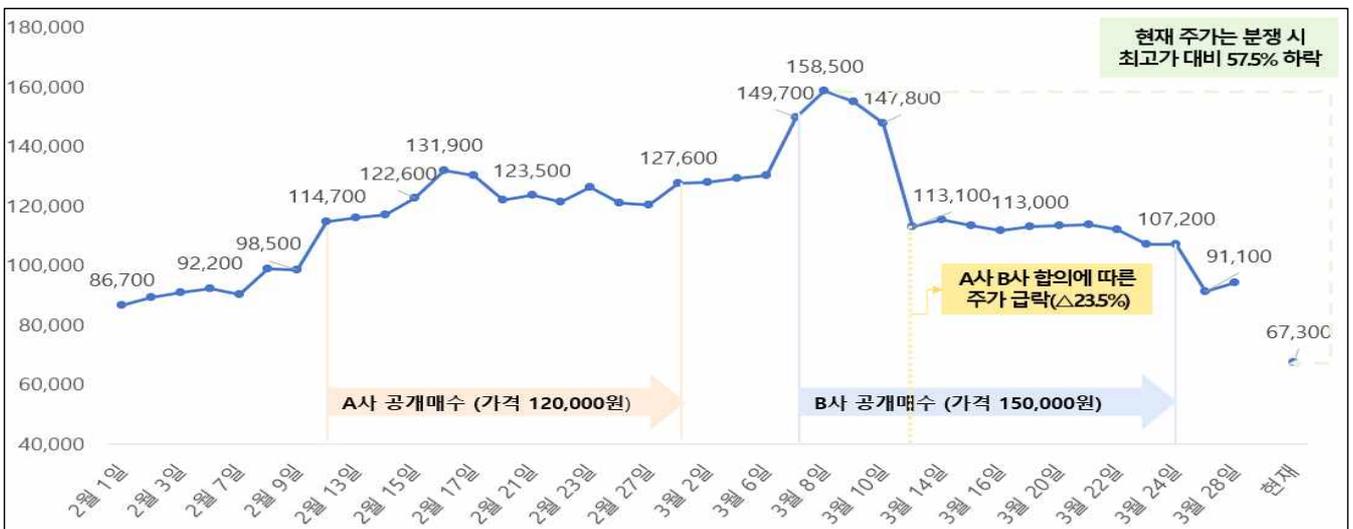
-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의 경우, 양측의 합의 등 분쟁 종료 상황이 발생하면 기간 중이라도 주가가 급격히 하락\*할 수 있음

\* ① 甲사 경영권 분쟁 공개매수: B사의 공개매수 기간 중 A사·B사가 합의를 도출 하면서 주가가 전일 대비 23.5% 하락(147,800원 → 113,100원)

② 乙사 경영권 분쟁 공개매수: D사의 공개매수 기간 중 C측의 지분 추가 매입에 따른 D사의 공개매수 실패가능성 확대로 주가가 전일 대비 25.1% 하락(21,150원 → 15,850원)

- 공개매수 종료 이후 주가는 분쟁 상황에서 급격하게 오른 주가 대비 크게 하락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할 필요(甲: △57.5%, 乙: △22.9%)

甲사 경영권 분쟁(A사 對 B사) 관련 공개매수 기간 중 주가



乙사 경영권 분쟁(C측 對 D사) 관련 공개매수 기간 중 주가



**② 근거없는 풍문 또는 루머에 현혹되지 마시고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**

- 공개매수 및 그 당사자와 관련한 여러 주장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
-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근거 없는 풍문 또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

**③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양도소득세,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세금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.**

-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하여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,
  -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개매수의 방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
- ※ 세금 종류에 따른 유·불리는 투자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**④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
-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은 매수한 즉시(T) 취득되지 않고 이후 두 번째 영업일(T+2)에 최종적으로 취득
-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종료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없음

**⑤ 공개매수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**

-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목표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매수예정 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하여 매수할 수 있음
-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매수 예정 수량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는 응모한 주식을 전량 매도 불가

**⑥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에 따라 응모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.**

- 공개매수 응모방법은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에 따라 지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청약만 가능하거나, 온·오프라인 청약이 모두 가능한 경우가 있음
- 투자자들은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매수 응모 방법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

**⑦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시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
-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종료 전에 공개매수가격 등 공개매수 조건 및 공개매수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
- 특히, 당사자간 공개매수 경쟁 중인 상황에서 공개매수조건이나 일정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자공시시스템(DART)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